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번	안 호	26-90
--------	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6. 9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경의선 책거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
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의 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책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의적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써 경의선 책거리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필요
- 위탁자는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,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,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·경제성 증대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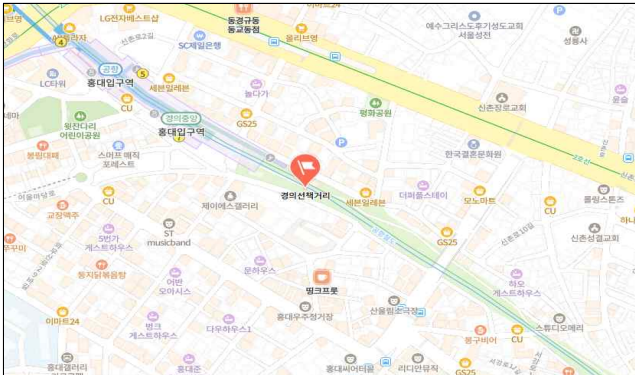
- 정의선 책거리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- 정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
- 정의선 책거리 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
- 조직·인사관리·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 등
-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위치: 와우산로35길 50-4 일대
- 조성년도: 2016년
- 사업규모: 6,411m²
- 세부시설

구분		면적	용도	비고
본부동	1층	150.61m ²	커뮤니티센터, 개방화장실	
	2층	149.50m ²	운영사무실, 다목적실	
부스동	1동	25.29m ²	입주사 부스	임대 운영
	2동	25.29m ²		
	3동	25.29m ²		
	4동	25.29m ²		
	5동	52.27m ²		
	6동	25.29m ²		
	7동	52.27m ²		
	8동	85m ²	홍보관 및 갤러리	
		28.33m ²	공실	
	9동	25.29m ²	부스(방송전용)	
광장		-	-	
와우교 하부		-	옛 역 부지	

○ 위치도 및 현황사진

	
위치도	현황사진

마. 민간위탁기간: 위·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(연간): 410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구분	민간위탁금	세부 산출내역
인건비 (3명)	130,000	급여, 유급휴가수당, 퇴직연금부담금, 4대보험료 등
운영비	100,000	사무관리비(사무용품 구입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공공운영비(제세공과금) 등
시설비	30,000	공간 보수 등
사업비	150,000	문화사업, 교육사업, 독서활성화사업, 네트워크사업 등
합계	410,000	

※ 단, 위탁예산은 인건비, 시설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의 위탁)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- 정의선 책거리 전반의 관리·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독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,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술·지식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 위탁 대상사무 등) 및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문화예술진흥법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6. 7. 1.] [법률 제21447호, 2026. 3. 5., 일부개정]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0. 7. 9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20호, 2020. 7. 9., 일부개정]

제6조(사업의 위탁)

-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 9. 18.] [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793호, 2025. 9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9.18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나. 향후일정(안)

- 민간위탁 선정 계획 수립 : 2026. 9.
-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등 접수 : 2026. 10.
-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개최 : 2026. 11.
- 결과 발표 및 협약 체결 : 2026. 11.
- 경의선 책거리 운영 계획 수립 : 2026. 11.
- 경의선 책거리 운영 : 2027. 1.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

□ 기본 검토사항

위탁사무명	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		
국 명 (주관부서)	관광경제국 (문화예술과)	부서장	행정5급, 임미희, 3153-8360
		팀 장	행정6급, 김정옥, 3153-8371
		담당자	행정7급, 정진화, 3153-8374
사무개요	○ 시 설 명: 경의선 책거리 ○ 시설위치: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-4 일대 ○ 사업대상: 마포구민 ○ 사업내용 - 작가 교류 프로그램, 청년 대상 체험·소통형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 사업 - 도서 관련 단체·저자·아티스트 등 지역민과의 교류 및 연계 사업 ○ 사업목적 - 책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의적 시민 참여형 공간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 - 마포의 특색을 살린 책문화 네트워크 구축		
민간위탁 추진목적	○ 경의선 책거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하고자 함		
위탁근거	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		
위탁내용	○ 위탁기간: 3년 ○ 위탁내용 - 경의선 책거리 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- 경의선 책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- 경의선 책거리 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등 - 조직·인사관리·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 등 -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 등		

적정성 검 토	○ 위탁사무의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사업의 위탁)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로 추진함이 필요함 ○ 공공성(공공성)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- 본 위탁사무는 구민의 독서문화를 고취하는 독서활성화 사업으로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○ 직영(용역 등), 투자출연기관 대행·고유사업과의 비교·분석			
	구 분	장 점	단 점	수탁기관 선정기준
	제1안 직접운영	· 공공성 강화 · 민원해결 용이	· 인건비 및 직원확보 부담 ·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성 저하	직 영
	제2안 시설관리 공단	·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인력의 탄력배치 가능 · 공공성 확보	· 민간위탁에 비해 인건비 부담	위원회 구성 생략
	제3안 민간위탁	· 인건비 절감 및 탄력적 운영 · 전문성 확보로 효율적 운영 · 이용객 요구에 신속한 대응	· 공공시설의 공공성 미흡 · 수익 우선으로 시설 노후화 우려	위원회 구성
	○ 타 부서 및 기존 위탁사무와 중복 여부 - 해당없음			
수탁기관 선정방법	○ 공개모집			

민 간 위탁금 (예산지원형 위탁 시 기재)	○ 신규 위탁: 410,000천원		
	구분	민간위탁금(천원)	세부 산출내역
	인건비 (3명 기준)	130,000	급여, 유급휴가수당, 퇴직연금부담금, 4대보험료 등
	운영비	100,000	사무관리비(사무용품 구입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공공운영비(제세공과금) 등
	시설비	30,000	공간 보수 등
	사업비	150,000	문화사업, 교육사업, 독서활성화사업, 네트워크사업 등
	합계	410,000	
※ 단, 위탁예산은 인건비, 시설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			
기대효과 및 향후계획	○ 기대효과		
	-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도모 -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		
	○ 향후계획		
	- 2026. 10.: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등 접수 - 2026. 11.: 위탁 협약 체결 - 2027. 1. : 경의선 책거리 개소		
전 문 가 의 견	-		